



공동주택의 준공시 외부소음에 대한 단지내 소음규정은?



현재 공동주택의 준공시 외부소음에 대한 단지내 소음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나타나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법조항의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준공시 측정소음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 건설시점의 예측소음도를 바탕으로 65dB 이상일 경우 방음시설 등을 계획하여 소음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준공시 소음규정으로 적용할 경우 소음측정은 개방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는 외부와 면하는 창을 열고 발코니 등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소음이 문제가 되는 지역은 무조건 방음벽(또는 방음림)을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더이상의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에 최근 연구결과들은 공동주택의 준공소음을 측정할 경우 외부와 면하는 창을 모두 닫고 거실 중앙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측정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연구(2004년)」와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기준(안) 연구(2005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본의 '건축물의 차음성능기준과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N-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내용과 특징은?



개요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중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급 구분	인증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되며, 배선기자재의 성능(광케이블 또는 UTP케이블), 배선량(코아 또는 페어수, 인출구수), 통신실 면적(집중구내통신실 또는 총통신실 등), 구내선로의 성능과 같은 구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등급 : 현재의 모든 서비스 및 미래의 예측 가능한 서비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수준 ○ 1등급 : 현재 제공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동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수준 ○ 2등급 : 현재 제공 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동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나 세대인입 회선수 및 인출구가 1등급보다 적은 수준 ○ 3등급 : 최소한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

※특등급과 1등급의 차이점

	특등급	1등급
배선기자재	-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 설치 - 광선로중단장치(FDF)와 광전변환장치(트랜시버)를 세대 단자함 내에 설치	- 동간 배선구간에만 광케이블 설치
인출구	- 각 실별로 4구 설치 - 세대 단자함에서 거실의 인출구 1곳까지는 예비배관 1공을 설치하거나 거실 인출구의 수량을 증가하도록 고려	- 각 실별로 2구 이상, 거실은 4구 이상 설치
집중구내통신실	- 세대수별 12~34 제곱미터 이상 (1등급에 비해 20% 이상 증가)	- 세대수별 10~30 제곱미터 이상

